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완화〉
■ 서일준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29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완화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일준의원 등 14인
2. 제안연월일 : 2026. 3. 25.
3. 회부연월일 : 2026. 3.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0제1항).

Ⅲ. 검토의견

1.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완화

개정안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보다 낮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0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제103조의20(세율) ① ----- ----- ----- -----.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 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 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 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 인 ¹⁾ 은 제외한다)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 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 업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 소를 「수도권 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 도권 밖에 둔 내국법인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1)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

현행	개정안										
2. (생략) ② (생략)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천분의 8</td></tr><tr><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6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7)</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3억3천82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td></tr><tr><td>3천억원 초과</td><td>56억5천82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3)</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8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6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7)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3천82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3천억원 초과	56억5천82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3)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8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6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7)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3천82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3천억원 초과	56억5천82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3)									
	<u>나. 가목 이외의 내국법인</u>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천분의 10</td></tr><tr><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td></tr><tr><td>3천억원 초과</td><td>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수도권 법인 등의 경우는 현행법상의 세율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에서 0.8%로(0.2%p 인하), 과세표준 2억원초과 200억원 이하는 2.0%에서 1.7%로(0.3%p 인하),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에서 1.9%로(0.3%p 인하),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는 2.5%에서 2.2%로(0.3%p 인하) 인하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일반 법인)	☐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세율 인하 ☐ (수도권 법인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td>1.0%</td></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2.0%</td></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2%</td></tr> <tr> <td>3천억원 초과</td><td>2.5%</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td>1.0%</td></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2.0%</td></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2%</td></tr> <tr> <td>3천억원 초과</td><td>2.5%</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 (신설)	☐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td>0.8%</td></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7%</td></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1.9%</td></tr> <tr> <td>3천억원 초과</td><td>2.2%</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8%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7%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9%	3천억원 초과	2.2%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8%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7%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9%																				
3천억원 초과	2.2%																				

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의 지방세부담의 경감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임.

다만, 현재도 수도권 집중완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 제도(기회발전특구 창업·사업장 신설 감면²⁾, 법인·공장의 지방 이전 감면³⁾)가 운영되고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2.(생략)

② 수도권(인구감소지역 또는 「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경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2.(생략)

③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2.(생략)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2.(생략)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추가적인 감면조치를 둘 것인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 반영 시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7년 149억원⁴⁾, 2031년 2,239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8,515억원(연평균 1,70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재정 여력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지방세,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 인하 (안 제103조의20 제1항)	-149	-1,949	-2,041	-2,138	-2,239	-8,515	-1,703

주: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세율 인하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긍정적 목표를 갖고 있으나, 재정 건전성과 정책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2.(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개정 세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상당수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2028년 이후 이루어져 2027년에는 세수감소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남.

문 의 처

02)6788-5333
